

# 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2003. 9. 24,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첨참조
4. 검 토 의 견 : 별첨참조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3년 10월 6일

**교육사회위원회**

**전문위원 권태환**

# 대전광역시 지하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이 조례안은 2003년 9월 24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1. 제안이유

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과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법의 전문개정과 동법 및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 하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지역의 지하수보전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보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.
- 나.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.
- 다. 지하수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“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”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).
- 라.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1조).

### 3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으로는,

우리시의 지하수보전·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등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시설을 설치·운영하도록 하여 지하수의 수량감소와 수질오염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지하수의 보전·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구로 “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”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지하수의 개발·이용 및 보전·관리를 위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다만, 지하수법이 2001년 1월 16일 전문 개정되고, 동법시행규칙이 2002년 1월 4일 개정되어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광역시가 이미 동 조례를 제정·시행중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시의 조례제정이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.